

군계획시설(체육시설-골프장)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5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5. 4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5. 4.

(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(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)

(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

나. 제안사유

- 화순군 지역의 관광 및 레저, 휴양기능을 효과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골프인구의 수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세수증대등의 목적으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현 용도 지역(관리지역, 농림지역)에서 골프장의 설치가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 치 :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산55-3번지 일원
- 면 적 : 434,243㎡ (131,359평)
- 토지이용현황 : 전.답 : 5.3%, 임야 : 93.7%, 기타 1.0%
- 용도지역

| 구 분 | 당 초 | 변 경 | 비 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용도지역 | 관리지역 (58,000㎡) 농림지역 (376,243㎡) | 계획관리지역 (434,243㎡) | |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

입안절차입니다.

- 입안지는 도곡온천 관광단지의 주변으로서 기존 900CC와 남광주CC의 사이에 위치하며 지역개발투자 유치 사업이자 관광레저 산업으로서 고용유발사업입니다.
- 다만,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환경영향 및 토양,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 N.G.O의 반대로 인한 집단민원의 발생의 우려도 있습니다. 보다 친환경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군계획시설(체육시설-골프장)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